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담배 정의 확대〉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7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담배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은 과세 근거가 없어 2023년 기준 총 11.7조 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세원으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무분별한 광고행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담배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일반 담배 제

품들과 달리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미국, 캐나다 등과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 담배에 일반 쉐련 담배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최근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추후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개정).

II. 검토의견

1. 담배 정의 확대 (안 제2조제1호 등)

현 행	개 정 안
○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u> 을 말함. <단서 신설>(제2조제1호)	○ “담배”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함(안 제2조제1호)</u> - 가. 연초 - 나.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 다.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은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줄기·뿌리 등 연초의 잎 외의 부분과 합성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유사담배 및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담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¹⁾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껴련·액상 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담배와 유사니코틴

1) 「담배사업법」 제2조(담배의 정의)는 연초 잎을 이용하는 액상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2014년 1월에 ‘증기로 흡입하는 경우’를 담배의 정의에 추가한 이후로 개정되지 않음.

을 활용한 무니코틴 유사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 용액이나 유사니코틴을 활용한 흡입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경고그림·문구표기나 광고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담배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서 제외되어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유사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첫째,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유사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포함 시켜 니코틴 중독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관세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기 위한 니코틴 용액은 2023년 기준 771톤 가량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유사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경고문구 표시 의무와 광고 제한 규정²⁾, 온라인 판매 제한³⁾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2)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

(단위: 톤, 천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천연	잎 추출	55	5,638	2	160	280	23,263	554	38,969	555	44,456
	다른 부분	417	28,823	218	11,043						
합성										98	6,444

자료: 관세청

*중량 = 용액+용기 무게

실제로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므로 영업장 외 광고⁴⁾를 하더라도 「담배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시가 있기도 하였음⁵⁾.

더욱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뿐만 아니라 가향물질 등을 첨가할 수 있어 국민 건강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⁶⁾가 있다고 보임. 하지만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③ (생략)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2022고정1030담배사업법위반(예비적 죄명 국민건강증진법위반), 선고: 2023.1.11.

6)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독성’확인… 사용중단 권고 유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0.5.,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48878443#top50>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정의하고 있는 바,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부터 추출된 천연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해성분 정기검사, 유해성분 정보 공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줄기나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유사 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시켜 「담배사업법」과 「담배유해성관리법」등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원료의 유래 구분 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을 담배 제품으로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2014년 당사자 총회에서 전자담배를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규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음.

둘째,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으로 제조된 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 간 담배 정의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이미 「지방세법」 7)과 「개별소비세법」 8)에서는

7)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 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경우도 담배로 보고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부터 추출된 니코틴을 활용하여 제조된 액상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등이 이미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 법률 간 담배 정의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률의 수범자인 소비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셋째,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액상 전자담배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시중에서 천연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켜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8)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飲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5. (생략)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첫째, 유사 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과금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될 경우, 각종 세금과 부담금⁹⁾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축소될 수 있음. 특히, 합성니코틴의 생산단가가 연초잎 니코틴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될 경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담배종류	부과 기준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개 별 소비세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엽연초 부담금	합 계
궐련	20개비	1,007	443	594	841	24.4	5	2,914.4
파이프담배	1그램	36	16	21	30.2	-	-	103.2
엽궐련	1그램	103	45	61	85.8	-	-	294.8
각련	1그램	36	16	21	30.2	-	-	103.2
전자담배	액상형	1밀리리터	628	276	370	525	1.2*	1,800.2
	궐련형	20개비	897	395	529	750	24.4	2,595.4
	고형물	1그램	88	39	51	73	24.4	275.4
물담배	1그램	715	315	422	1,050.1	-	-	2,502.1
씹는 담배	1그램	364	160	215	34.4	-	-	773.4
머금은 담배	1그램	364	160	215	534.5	-	-	1,273.5
냄새맡는 담배	1그램	26	11	15	21.4	-	-	73.4

자료: 기획재정부

*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기물 부담금은 카트리지 당 24.4원 부과(1개당 1.22원)

9)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쉐련과 달리 타르 등 유해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금연보조제로서 흡연자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¹⁰⁾이 있을 뿐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쉐련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축소될 경우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의 선택권 제한 및 쉐련의 소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 논의는 쉐련과 비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금연보조 효과, 영세 소매업주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영국의 경우 전자담배를 담배와 분리하여 별개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쉐련보다 덜 유해하며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이드언스를 발표하기도 하였음.¹¹⁾ 뉴질랜드 역시 전자담배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보건부는 ‘Vaping Facts¹²⁾’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쉐련보다 해로움이 적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10) 정유석, ‘위해감축의 관점에서 본 전자담배’, 대한의사협회지 제63권 제2호, 105-111p, 2020.2.

11) “Guidance, Smoking and tobacco: applying All Our Health”, 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 Disparities, 2022. 4. 5.

12) <https://vapingfacts.health.nz/>

원료로 제조한 경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았으나 담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는 제품을 「담배사업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니코틴 이외의 물질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킬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획재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니코틴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부담¹³⁾하게 될 우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한편, 개정안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단서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음.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소비되는 제품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기획재정부는 연초 앞 이외의 부분 및 합성니코틴에 대한 담배 정의 확대와 관련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24.6~12월)이므로 동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의견을 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13) 「담배사업법」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된 ‘원료로서의 물질’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은 구별될 필요가 있으므로 단서조항 신설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무니코틴 유사담배에 대한 담배 정의 확대와 관련하여 무니코틴 담배는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중이고 무니코틴 담배는 당초 「담배사업법」과 「약사법」에서 규제하였으나, 감사원 지적¹⁴⁾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무니코틴 유사담배를 담배 정의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경고문구 표기 등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 담배 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보건복지부는 니코틴의 경우 가지과 식물 등에서 추출이 가능하므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담배 정의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연초’·‘니코틴’과 직·간접적 연관성 없는 새로운 중독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성분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관계 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4) 담배대용품을 「담배사업법」에서 관리하는 경우, 유해성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약사법」에 일원화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

한편, 법무부는 담배 정의 규정은 제27조(벌칙) 등의 전제인 바, 개정안의 제2조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모호하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 -----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u>의약외품은 예외로 한다.</u>
<신설>	가. 연초(煙草)
<신설>	나.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신설>	다.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0

참고 1

현행 니코틴·무니코틴 관리 현황

□ 농도에 따른 니코틴 관리 현황

구 분	니코틴												無니코틴
	1% 미만				1% 이상 ~ 2% 이하				2% 초과				
	연초		합성 연초·합성 外 (가지과 식물 등)	연초·합성 外 (가지과 식물 등)	연초		합성 연초·합 성外 (가지과 식물 등)	연초		합성 연초·합 성外 (가지과 식물 등)			
	잎	줄기·뿌리			잎	줄기·뿌리		잎	줄기·뿌리				
담배사업법	○	×	×	×	○	×	×	×	○	×	×	×	×
화학물질관리법*	×				○ (담배용도로 판매 시 영업허가 면제)				○ (영업허가 대상)				×
(참고) 담뱃세	○		×	×	○		×	×	○		×	×	×
(참고) 약사법	○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

자료: 기획재정부

*국제기구(UN)에서 정한 유독물질 기준(함유량의 1% 이상)에 따라 니코틴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규제. 다만, 담배 용도는 껴런(니코틴 함유량 통상 1.6%~2%)과 유사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경우 영업허가 면제

참고 2

합성니코틴 규제 관련 해외사례

-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하여 규제 중

*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정의: 미국, 칠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

담배제품과 별도로 전자담배를 정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9개국

※ (미국 담배제품 정의)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or containing nicotine from any source, ... (Food, Drug, and Cosmetic Act, '23.4월)

- 19개국에서 전자담배(합성니코틴 포함)에 대해 과세 부과 중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및 과세 현황(보건복지부, 24.8월) >

연번	담배협회 조사			복지부 확인 결과			
	국가명	규제	과세	규제	정의 기준		과세
					담배제품 ¹⁾	전자담배 ²⁾	
1~3	콜롬비아, 일본, 한국	X	X	X			X
4~5	멕시코, 튀르키예	X	X	O (전자담배 판매 금지)			X
6	미국	O	각주마다 상이	O	O		각주마다 상이
7	칠레	O	X	O	O		X
8	아이슬란드	O	X	O	O		X
9	아일랜드	O	X	O	O		X
10	이스라엘	O	O	O	O		O
11	코스타리카	X	O	O		O	O
12	벨기에	O	O	O		O	O
13	캐나다	O	O	O		O	O
14	체코	O	O	O		O	O
15	덴마크	O	O	O		O	O
16	에스토니아	O	O	O		O	O
17	핀란드	O	O	O		O	O
18	독일	O	O	O		O	O
19	그리스	O	O	O		O	O
20	헝가리	O	O	O		O	O
21	이탈리아	O	O	O		O	O
22	라트비아	O	O	O		O	O
23	리투아니아	O	O	O		O	O
24	노르웨이	O	O	O		O	O
25	폴란드	O	O	O		O	O
26	포르투갈	O	O	O		O	O
27	슬로바니아	O	O	O		O	O
28	스웨덴	O	O	O		O	O
29	프랑스	O	X	O		O	X
30	룩셈부르크	O	X	O		O	X
31	네덜란드	O	X	O		O	X
32	뉴질랜드	O	X	O		O	X
33	슬로바키아	O	X	O		O	X
34	호주	O	X	O		O	X
35	오스트리아	O	X	O		O	X
36	스위스	O	X	O		O	X
37	영국	O	X	O		O	X

* 1) 담배제품(Tobacco Products)의 정의 내에 전자담배를 포함

2) 별도의 법령 또는 조항을 통해 Vaping Products, e-cigarette, electronic cigarette 등으로 정의